번호			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
6			제134회 제2교시 6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
			· 중대재해처벌법: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의 안전·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
			명피해 발생 시 처벌을 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
			· 의무 주체: 사업주, 경영책임자등(사업 대표·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			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, 법 제2조 제9호)
			· 보호 대상: 종사자(근로자,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 제공자, 각 단계 수
			급인 등, 법 제2조 제7호)
			· 적용 범위: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(법 제3조), 도급 등 관
			계에서도 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 책임 시 적용(법 제5조)
			2.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(법 제4조 제1항)
			·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			에 관한 조치(제1호)
			·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(제2호)
			·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·시정 등을 명한 사항
			의 이행에 관한 조치(제3호)
			·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제4호)
			· 제1호·제4호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
			3. 제1호 세부 조치(시행령 제4조)
			·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번호			· 전담 조직 설치: 산안법상 두어야 할 인력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
6			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
			·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업무절차 마련, 반기 1회 이상 점검(위험성평가
			실시·보고 시 점검으로 봄)
			· 재해 예방 인력·시설·장비,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·용도
			대로 집행
			· 안전보건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·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·예산 부여,
			평가기준 마련 후 반기 1회 이상 평가·관리
			·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안전보건관리담당자·산업보건의 법정 인원 이상
			배치,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
			·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
			· 작업 중지·대피·위험요인 제거, 구호, 추가 피해방지 매뉴얼 마련, 반기 1회
			이상 점검
			· 도급·용역·위탁 시 수급인 평가기준·관리비용·공사기간(건설업·조선업) 기
			준과 절차 마련, 반기 1회 이상 점검
			4. 제2호·제3호 이행
			·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,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확인
			· 행정기관의 개선·시정명령 사항 이행 및 결과 확인
			· 시행령 위임 없음, 조치 결과 기록 유지 필요

번호			5. 제4호 세부 조치(시행령 제5조 제2항)
6			·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(지정 기관 위탁 포함), 직접
			점검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결과 보고받음
			· 미이행 확인 시 인력 배치·예산 추가 편성·집행 등 필요한 조치
			· 유해·위험작업 법정 안전·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, 직접
			점검하지 않은 경우 결과 보고받음
			· 미실시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 지시·예산 확보 등 조치
			6. 이행 증빙과 위반 시 처벌
			· 조치 이행 사항 서면(전자문서 포함) 작성, 이행일부터 5년간 보관(시행령
			제13조, 소상공인 제외)
			· 사망자 1명 이상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, 병과 가능(법 제6
			조 제1항)
			· 부상자·직업성 질병자 기준 해당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제6
			조 제2항)
			· 법인·기관 양벌: 제6조 제1항 50억원 이하 / 제2항 10억원 이하 벌금, 상당
			한 주의·감독 시 제외(제7조)
			7. 건설현장 이행 방안(학습용 정리)
			· 본사: 경영방침·목표를 현장 위험성평가 계획과 연결, 반기 점검 일정 연간
			계획에 반영
			· 현장: 위험성평가 결과·개선 이행을 본사에 정기 보고, 미이행 사항 예산·
			인력 보완 요청

번호			· 협력업체: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, 적정 공사기간·관리비용 기준 계약
6			에 반영
			· 증빙: 점검표·평가 결과·회의록을 서면으로 5년 보관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